

[특집]

교황청 내사원(Paenitentieria Apostolica)에 대한 연구*

— 특징, 역사, 조직, 관할권 관련 사례 연구 —



김 의 태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신부]

서 론

1. 내적 법정의 개념
 2. 자비 법정인 교황청 내사원
 3. 기관의 관할권에 포함된 빈번한 주제
 4. 대사
- 결 론

서 론

사실 한국교회에는 교황청 내사원(Paenitentieria Apostolica)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교황청 내사원이라 하면 보통 각 교구에서 대사(indulgentia)를 요청할 때 그 요청을 검토하고 수여하는 기관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유학생할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의 적용에 따라 개최된 혼인무효소송 절차 관련 코스를 배우는 동안 사도좌 대심 법원(Signatura Apostolica)과 로마 공소 법원(Rota Romana)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Palazzo del Cancelleria’을 방문했고, 그곳에 교황청 내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좌 대심 법원과 로마 공소 법원은 학업을 통해 접하게 되었

* 이 글은 2019학년도 수원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지만, 교황청 내사원은 생소했고, 문득 이 기관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 법정에 접근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법정을 운영하는지 궁금했다. 내적 법정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느님과 신자 개인의 내적 영역을 관할할 수 있을까? 실제로 교황청의 모든 기관이 영혼의 구원이란 목적을 지니지만, 내사원은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어떤 점을 지니고 있는가? 많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통해 교구장에게 유보된 죄까지 교구사제도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예를 들어 낙태죄에 대한 사면), 이는 분명 교구사제가 사도좌에 유보된 죄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좌에 유보된 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된 본 연구는 내사원에 대한 특징, 역사, 조직, 관할권 등과 같은 주제를 살펴볼 것이다. 내적 법정을 관할하는 내사원이 사도좌에 유보된 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용서가 가능한 죄라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 기관과 관련된 경우들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내적 법정을 관할하는 교황청 내사원과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다루며,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각각의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그리고 내적 법정 중 성사 내적 법정, 성사 밖의 내적 법정 각각의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1. 내적 법정의 개념

‘내적 법정’(forum internum)이라는 표현은 보통 ‘개인적인’(privacy)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마치 개인의 자주적 영역으로서 양심의 영역 혹은 외적 규율에 속박되지 않는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제도에서는 이런 개념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좁은 의미에서 ‘내적 법정’은 교회가 지닌 통치권에 따라¹⁾ 은밀하며 공개되지 않은 통치행위의 하나이며, 교회는 내적 법정에서 신자 개개인이 처한 사목적 상황(성품과 관련된 무자격 및 장애, 성사집행 및 성사생활 금지, 교정벌 등과 같은 법률적 제재, 은전, 관면, 대사 등등)을 해결하거나 조치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과 고유한 법률을 적용하여 교회의 통치권한을 행사하게 된다.²⁾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법 판결을 내리는 장소’라는 의미³⁾의 ‘forum’(법정)이라는 낱말과 ‘internus’라는 낱말의 합성어다. 유대인 문화에서 비롯된 ‘internus’라는 낱말은 세상의 정의와 구분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정의 즉 ‘내적인’ 또는 ‘신의 영역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⁴⁾

교회는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힘쓴다. 그러나 구원을 관장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교회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다.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범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백히 교회에 부여하셨다(마태 16,19). 이 권한으로 교회는 영혼 구원에 기초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는 공동체의 공동 선익을 위해서 교회법 체계 특히 법률적 판단의 영역을 수행해 왔으며, 신자 개개인의 영혼 선익을 위해서도 교회의 고유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의 형태로 드러났지만, 과거에는 온전한 교회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항상 두 법정의 충돌(conflictus) 가능성이 존재했다.⁵⁾ 사실 교회의 첫 1천

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이하 ‘교회법’으로 표기), 제129조.

2) Cf. K. Nykiel “Foro interno”,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enitentiaria Apostolic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p.186.

3) Cf. S. De Angelis, “Foro”, in *Dizionario di teologia morale*, F. Roberti/Palazzini P., Roma: Editrice Studium, 1954, p.541.

4) Cf. P. Prodi, *Una storia della giustizia. Dal dualismo dei fori al moderno dualismo tra coscienza e diritto*, Bologna: il Mulino, 2000, p.25.

5) 참조: 김효석, 「가톨릭교회의 내적 법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 신학』 25(2012),

년 역사에는 ‘내적 법정’(forum internum)이라는 분명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한행사에서 법적 영역과 윤리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치가 양심의 영역과 혼합되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⁶⁾

이러한 혼란은 1917년 교회법전⁷⁾ (이하 ‘구법전’으로 표기)까지 이어졌다. 구법전 제196조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통치권한 방법인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을 언급했고, 이후 내적 법정을 양심의 법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하게 된다.

‘하느님 법에 의하여 교회가 가지는 관할권 즉 통치권은 외적 법정에 의하는 것과 내적 법정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후자 즉 양심의 법정은 성사 법정과 성사 밖의 법정으로 구분된다’(Postestas iurisdictionis seu regiminis, quae ex divina institutione est in Ecclesia, alia est fori externi alia fori interni, seu conscientiae, sive sacramentalis sive extrasacramentalis).⁸⁾

내적 법정을 양심의 법정(forum conscientiae)으로 표현하면서 법률 영역과 윤리 영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내적 법정에서 죄를 용서하는 참회의 성사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은전(gratia), 관면(dispenatio), 교환(commutatio), 보정(sanctio), 교정벌(censura) 같은 법적 제재에 대한 사면(absolutio ad vinculis iuridicis) 등 성사 밖의 영역도 다루기 때문에 법률적, 윤리적, 성사적 질서의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⁹⁾

다행히 이 혼란은 1983년 교회법전에서 극복되었다. 교회법 제130조는 우선 통치권이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나뉘지 않고 교회

51~52쪽.

6) Cf. A. Mostaza Rodríguez, “Forum internum-forum externum(En torno a la naturaleza jurídica del fuero interno)”, *Revista Española de Derecho Canónico* 23(1967), 256~284.

7) Cf. 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Pietro Gasparri(ed.),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21.

8) 구법전 제169조.

9) 참조: 김효석, 앞의 글, 54~57쪽; M. F. Costantino, “Il foro interno nell’ordinamento giuridico ecclesiale”, *Prawo Kanoniczne* 58(2015) n.3, 32~34.

내에서는 유일한 통치권만이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즉, 일반적으로 외적 법정에서 행사되지만 때로는 내적 법정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통치권은 본래 외적 법정에서 행사된다. 그러나 내적 법정에서만 행해지는 때도 있으나, 이때에는 그 권력 행사가 외적 법정에서 가지게 되어 있는 효과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¹⁰⁾ 다만 법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제130조는 명확히 공개된 방식으로 행사되는 외적 법정인 경우(외적 법정의 대상인 외적 행위에는 행정 행위와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됨)와 은밀하며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내적 법정의 경우(성사 내적 법정, 성사 밖의 내적 법정)를 구분하고 있다.¹¹⁾ 또한 내적 법정의 또 다른 용어였던 ‘양심의 법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내적 법정이 인간의 양심과 윤리의 영역만이 아니라 외적 법정과 마찬가지로 통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²⁾

교회는 왜 하나의 통치권 안에서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을 구분하고 있는가? 우르바노대학교 교회법학자인 데 바울리스(V. De Paolis, 1935~2017) 신부는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외적 법정에서 갖게 될 효과가 내적 법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내적 법정에서 외적 법정으로 이관되어도 외적 법정의 본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1) Ioannes Paulus II,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5(이하 ‘동방교회법전’으로 표기), 제980조 2항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한다(§ 2. Se la potestà di governo si esercita solo per il foro interno, gli effetti che il suo esercizio è destinato ad avere nel foro esterno non vengono riconosciuti in questo foro se non in quanto ciò è stabilito dal diritto in determinati casi).

12) Cf. V. D. Paolis, Andrea D’auria, *Le Norme General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1, Citta del Vaticano: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8, pp.427~430; Egidio Miragoli, “Penitenciaría Apostólica”, in *Diccionario General de Derecho Canónico*, vol.6, Navarra: Universidad de Navarra, 2012, p.107.

“내적 법정은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지 않은 채, 하느님과 신자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외적 법정은 상호주관적인 사회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¹³⁾

통치권을 행사하는 교회는 사회 질서와 공동선만이 아닌 하느님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관계, 다시 말해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을 모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1. 내적 법정을 위한 교황청 부서, 내사원

교회 내에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동시에 내적 법정에 대한 통치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은 성좌(Holy See)와 교구 직권자다. 성좌는 전체 가톨릭교회에 그 관할권이 존재하며, 교구 직권자는 성좌에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만 교구 내에 그 관할권이 존재한다.¹⁴⁾

교황청 내사원은 내적 법정을 담당하는 교황청 기관이다. 그러나 어원적 의미로 ‘Paenitentia’라는 용어는 사도좌 대심 법원(Signatura Apostolica)과 로마 공소 법원(Rota Romana) 같은 일종의 ‘재판소’ 개념이나 일반적인 ‘교도소’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내적 법정에서는 청원자의 자발성이 요구되며, 내적 법정은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공개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내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참회자의 상황을 참회 당사자가

13) V. D. Paolis, “De recognoscendo iure poenali canonico”, *Periodica* 63(1974), 66.

14) Cf. K. Nykiel, *op.cit.*, pp.186~187.

15) 1989년 11월 10일에 발행된 우리말 교회법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Paenitentia’를 어떻게 번역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사도좌 대심 법원과 로마 공소 법원 그리고 교황청 내사원은 같은 주소, 같은 건물에 위치하기에(주소지는 로마 시내에 위치한 ‘Piazza della Cancelleria, 1’이며 이곳 칸첼레리아 궁전 [Palazzo della Cancelleria] 내에 위 기관들이 모두 소재한다), 같은 종류의 사법기관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Paenitentia’라는 용어에는 사실 ‘수감시설’ ‘형무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번역위원회는 이러한 의미를 배제하기 위해 내사원(內赦院)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듯 보인다.

스스로 설명하고 증언하는 자발적 고백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특수한 기관이다. 즉 철저히 자발적이고 양심적이며 소송이 없는 형태를 지닌다. 신자 스스로가 해당 관할권자에게 자발적인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또한 교회에서 부과된 금지 및 제재에 처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은밀하게 유지된다. 내적 법정이 개시되는 결정적 요인은 주로 형벌제재, 무자격, 그리고 장애가 일어난 상황에서 은밀하고 비공개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며, 당사자만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로 인한 금지항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행된 낙태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가 연루될 수 있다. 그러나 낙태에 가담한 이들이 두려움이나 무지로 행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하지만, 그 행위에 따른 형벌제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 참조).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친교(communio)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문이라는 벌은 교회법 규정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인 장상의 처분에 따라 법적, 사회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신비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해사제에게 개인이 고백을 시작함으로써 그 범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해당 관할권자(사도좌 혹은 교구 직권자)가 결정된다. 물론 참회자의 범죄가 교구 직권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내사원에 청원할 수 있는 참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교회법 제64조 참조). 또한 내적 법정을 통해 개인의 내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죄를 용서받은 형태로 신자들을 격려해야 하며, 동시에 신자들의 좋은 평판에 대해 완전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교회법 제220조 참조).

내적 법정은 통치권에 대한 은밀한 행위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법정이다. 내적 법정에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통치권이 행사된다(교회법 제129조). 이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성사적 행위와 다른 개념이다. 고해사제는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사만

을 집전한다. 원칙적으로 고해사제는 형벌제재 또는 교회법 제재를 면제할 수 없다.¹⁶⁾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1986년 주교회의 춘계정기 총회에서, 1983년에 반포된 새 교회법에 따른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통해 교구장 주교에게 주어진 사면의 권한을 전국의 사제들에게 위임했다. 특히 ‘특별권한’ 제12조에, 교황청에 유보된 죄를 제외하고는 “보편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징계벌을 사면해 줄 수 있다”¹⁷⁾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신앙을 거스른 죄(교회법 제1364조 1항 참조), 주교 폭행죄(교회법 제1370조 2항 참조), 성직 도용죄(교회법 제1378조 2항; 제1383조 참조), 고해사제 무고죄(교회법 제1390조 1항; 제1387조 참조), 독신 의무 위반죄(교회법 제1394조 1항; 2항 참조), 낙태죄(교회법 제1398조 참조) 등은 고해사제가 사면해 줄 수 있다.¹⁸⁾

1.2. 내적 법정의 주요한 특징¹⁹⁾

위에서 언급한 내적 법정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당사자의 자발적인 청원: 앞서 말했듯이 내적 법정에 대한 권한은 교회제도에 의해 구성된다. 철저히 자발적이고 양심적이며 소송이 없는 형태를 지닌다. 당사자에게만 내적 법정을 시작할 권한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당사자만이 관련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16) Cf. J. I. Arrieta, “Il foro interno: natura e regime giuridico”, *Iustitia et Iudicium* v.3, 2010, pp.1249~1250; F. J. Urrutia, “Il criterio di distinzione tra foro interno e foro esterno”, in *Vaticano II: Bilancio e prospettive — Venticinque anni dopo(1962~1987)*, I R. Latourelle(a cura di), Assisi: Cittadella, 1988, p.550.

17)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주교회의 회보』 36(1986), 12쪽.

18) 참조: 정진석,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183~184쪽.

19) Cf. K. Nykiel, *op.cit.*, pp.188~189.

20)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5, pp.15~18.

1) 은밀한 법률적 조치: 권한권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은밀한 통치권 행사다. 당사자에 의해 통치권이 행사됨과 동시에 당사자가 밝힌 내용에 대해 은밀하고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고해사제를 만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이후 고해사제는 은밀히 공개되지 않도록 이 사안에 대해 조치한다.²¹⁾

2) 사면의 성격을 지닌 통치권 행위: 내적 법정에서 통치권은 반드시 용서, 그리고 사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내적 법정 안에서만 ‘복종’(submissio)이라는 법적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위자의 모든 통치권 명령은 전부 외적 법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은 행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교회법 제1732조 참조). 내적 법정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교회가 설정한 통치권한에 관련된 규칙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즉 은밀한 형태로 된 가를 지시하고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며, 교회 권위자가 어떠한 법적 강제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적 법정을 통한 이러한 통치권은 신자가 자발적으로 권위자에게 소원할 때 발생하며, 그 신자에 의해 행사되고 결정되는 것이다.

3) 법적 안정성과 증거 문제: 내적 법정의 사법적 행위는 법적인 효과를 지니며, 외적 법정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은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과 공개성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성사 밖의 내적 법정에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 일시적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철저히 비밀과 익명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교구청 비밀문서고에 관련사실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교회법 제1082조).²²⁾

4)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사이의 비양도성(incommunicabilitas): 두 법정 간의 비양도성은 교회법 제도의 일반적 원칙이며, 이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외적 법정에서 시작된 경우는 내적 법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외적 법정에 다른 부서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21) Cf. *Ibid.*

22) 참조: 김의태, 「내적 법정 안에서 성품 관련 무자격 및 장애에 관한 소고」, 『이성과 신앙』 66(2018), 146~147쪽.

된다. 그러나 교회법 제64조에서 언급한 예외적 경우도 존재한다. 내적 법정에서 접수된 경우들은 때로 외적 법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교회 권위자가 신자들의 선의를 위해 추문을 예방하고 내적 법정의 결정적인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한 성직자의 정직 혹은 한 사람의 파문 등등) 등이다.²³⁾

2. 자비 법정인 교황청 내사원

교황청 내사원은 양심의 개별적인 경우들을 ‘판결하기’(iudicare) 위한 목적이 있기에 교회 제도상 하나의 법정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다른 법원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결정짓는 구체적 특수성들이 존재한다.

2.1. 교황청 내사원의 특징

1) 절대 비밀 유지: 교황청 내사원은 절대 비밀 유지 하에 사건을 다룬다. 그것은 고해사제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²⁴⁾ 또한 어느 누구도 신자가 교황청 내사원에 직접 소원할 의지를 금지할 수 없다. 소원 방식은 고해사제를 통해 접수되며 고해사제가 소원의 책임자가 되어 내사원에 간단한 편지 형태로 전달한다. 내사원은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밝힌 심리적 정보, 성격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보, 명성 등 당사자의 모든 신상을 비밀 보장한다. 예를 들어 비밀 유지를 위한 특징 중 하나로 내

23) Cf. C. E. Commentz, *op.cit.*, pp.25~26.

24) Cf. C. E. Commentz, *op.cit.*, pp.15~16(고해비밀누설); pp.17~18(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 pp.37~38(참회자 고해사제가 다시 만들 수 없을 때); pp.41~45(성품무자격).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62~63.

사원 내 심리과정에 회부된 참회자의 익명성을 유지한다. 고해사제가 소원 내용 중에 참회자의 이름을 표기 및 암시했는지라도 내사원에서는 그 이름을 삭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고해사제도 참회자가 본인의 사건을 밝힐 때, 항상 가상의 이름(예를 들어 이탈리아어로 ‘아무개’라는 뜻의 Tizio Caio, Sempronio 혹은 영어로 ‘아무개’라는 뜻의 Tom, Dick, Harry)을 사용해야 한다. 내사원의 답서는 내적 법정을 통해서만 유효하고, 고해사제는 규정에 따라 답서의 절차대로 진행한 후 답서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²⁵⁾

2) 소송의 부재: 이 법정은 자신의 양심을 표명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내사원 추가경에게 어떠한 교회법적 형벌에 대한 처벌 혹은 징계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신속함: 이 법원의 신속함 문제는 중요하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기에 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원이 도착한 후 24 시간 내로 답서를 발송한다. 이 답서는 고해사제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우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내사원 법원에서 소원하는 소원장에 대한 비용은 각 나라의 우편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내사원에서 고해사제에게 보내는 과정은 모두 무료이며 어떠한 지불비용이 발생하지 않다. 또한 어떠한 기부금도 허용하지 않는다.²⁶⁾

2.2. 교황청 내사원의 간략한 역사

교황청 내사원은 6세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교황에게 주어진 권한(plenitudo potestatis)이 강화되면서 형벌 부과 권한도 부여하게 되었고, 그 형벌을 사죄하는 권한(facultas ligandi et facultas absolvendi a poenis) 역시 강화되었다. 그래서 전 유럽에서 사도좌를 방문하는 참회 순례자의 수가 급증했다.²⁷⁾ 신자들이 양심에 대한 중대한 문제

25)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26~28.

26) Cf. *ibid.*, p.35;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63.

를 해결하거나 교황에게 명시적으로 유보된 사건들에 대해 성사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죄를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다. 이 시대에 참회성사에 관한 문제를 책임질 실질적인 기관은 없었지만 추기경 가운데에서 한 명의 고해사제를 선정했다.²⁸⁾

교황청 내사원(poenitentiaria)은 1256년 11월 24일 교황 답서를 통해 교황의 권한에 유보된 경우들의 사면을 담당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처음 언급된다. 그 기관의 기관장인 ‘우고 다 산 카로’(Ugo da San Caro) 추기경은 ‘Poenitentiarius summus’ 혹은 ‘Sedis apostolicae poenitentiarius generalis’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성품무자격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사면했다.²⁹⁾

이미 12세기 말부터 내사원은 제도상 잘 갖추어진 하나의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내사원은 사도좌법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⁰⁾ 그러나 고유한 구조와 조직을 가진 내사원의 모습은 1338년 4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2세(1334~1342)의 문헌 *Argo Dominico*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으로 구조, 권한 및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³¹⁾

내사원은 내적 법정과 관련된 사안 외에도 외적 법정과 관련된 사안도 다루었는데, 예를 들어 혈통의 결함(defectus natalis)에 대한

27) Cf. A. Saraco, *La Penitenzieria Apostolica - Storia di un tribunale di misericordia e di pietà*,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1, pp.9~10; A. Saraco, “Penitenzieria Apostolica”,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327.

28) 이는 1193년 하나의 문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추기경 Johannes de Sancto Paulo를 언급하며 “교황에게 고해성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추기경이 있었다”(Erat autem cardinalis, qui condessiones pro papa tunc recipiebat)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Cf. N. Del Re, *La Curia romana. Lineamenti storico-giuridici*,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0, p.261.

29) “Magister Albertus”라는 문서에서 “Nos [...] auctoritate domini pape, cuius 교도소 curam gerimus, super irregularitate inde contracta dispensavimus [...] (우리는 교황의 권위 아래 성품무자격에 관해 사면하는 내사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언급함, Cf. C. M. Fabris, “Il foro interno nell’ordinamento giuridico ecclesiale”, *Pravo Kanoniczne* 58(2015) n.3, 54.

30) Cf. Z. Grocholewski, “I Tribunali”, in: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P. A. Bonnet — C. Gullo(a cura d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pp.396~399.

31) Cf. *Bullarium Romanum* 4(1859), 416~424(M. Fabris, *op.cit.*, p.55에서 재인용).

관면 및 전쟁 중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처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대 교황들은 외적 법정에서 다룰 사안을 점차 내사원에 배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기관에 배당된 사안들에 대해 재조정 문제가 제기되었고, 수많은 개혁이 필요했다. 특별히 교황 비오 5세(1566~1572)에 의해 그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는 교황 식스투스 5세(1585~1590)에 의해 공식적으로 교황청이 설립³²⁾되기 20년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내사원의 관할권에 속한 문제들을 상당히 줄인 획기적인 개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면권 외에도 양심에 관한 혐의와 논쟁의 해결 또는 답변 권한이 주어졌다.³³⁾

내사원은 교황 베네딕토 14세(1740~1758)에 의해 재조정 및 정립되었다. 내사원 소속 교회법학자였던 교황은 내사원의 관할권과 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관할권에 대한 문제들을 더욱 명확히 정립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에서 죄와 교정벌을 사면하는 권한, 교황에게 유보된 경우의 사죄, 혼인관면 수여, 성품무자격에 대한 관면 수여, 내적 법정에서 은밀히 수여되는 제재의 관면, 사도좌에 제출된 확실한 혐의 및 실질적인 사건들에 대한 사면권 등이다. 이러한 관할권 문제들에 대한 확립은 소속 기관의 구성 및 절차까지도 변화하게 만들었다.³⁴⁾

내사원의 핵심 구조는 여러 헌장을 통해 확립되었는데, 특히 교황 비오 10세(1903~1914)의 문헌 *Sapienti Consilio*에서 교황청의 전반적인 개편을 이루었고, 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의 문헌 『착한 목자』(*Pastor Bonus*)³⁵⁾에서 구성된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32) Cf. Sixtus V, Cost. Ap. “Immensa Aeterni Dei”(1588.1.2), *Bullarium Romanum* 8(1863), 985~999.

33) Cf. A. Saraco, *op.cit.*, pp.31~32.

34) Cf. A. Rodriguez Luno, “Benedetto XIV e la Riforma della Penitenzieria Apostolica”, in *Penitenzieria apostolica e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Percorsi storici-giuridici-teologici e prospettive pastoral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p.163; M. Fabris, *op.cit.*, p.56.

35) Ioannes Paulus II, Cost. ap. “착한 목자”[*Pastor Bonus*(1998.6.28)], *Acta Apostolicae Sedis*(이하 ‘AAS’로 표기) 80(1988), 841~930.

주었다. 교황 비오 10세는 내사원의 관할권에 대해 ‘내적 법정을 통한 은전을 위한, 그리고 양심과 관련된 결정을 위한 법원’이라 정의했고 성사 내적 법정 및 성사 밖의 내적 법정이 내사원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³⁶⁾ 이후 교황 베네딕토 15세(1914~1922)는 성 우피치노 성성(S. Congregatio Sancti Offici)에서 담당했던 대사수여 기능을 내사원으로 옮겨 왔다.³⁷⁾

2.3. 교황청 내사원의 구조³⁸⁾

내사원은 1935년 3월 25일 교황 비오 11세(1922~1939)의 문헌 *Quae Divinitus*에 기술된 규정에 적용받고 있다. 이후 위 문헌의 내용은 1967년 8월 15일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문헌 *Regimini Ecclesiae*에서 재인용되었고, 이후 문자 그대로 『착한 목자』에 인용되었다.³⁹⁾

교황청 내사원 대표는 상급 내사원 추기경(Cardinale Penitenziere Maggiore)이라 칭한다. 그는 내사원의 최고 대표로서 내사원의 모든 권한을 지닌다. 사실 이 권한들을 열거하기란 어려운 문제다. 양심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사원의 고유한 권한에 대한 확신과 보안을 위해 교황 베네딕토 16세(2005~2013)는 교황직 초기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36) Cf. Pius X, Cost. ap. “Sapienti consilio”(1908.4.29), *AAS* 1(1909), 7~19; Pius XI, “Quae divinitus”(1935.3.25), *AAS* 27(1935), 97~113; Paulus VI,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8.15]), *AAS* 57(1965), 885~928; Penitenzieria Apostolica, *Guida e regolamento dell'archivio storico*,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37)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자의교서 “Alloquentes proxime”에서 밝힌 네 번째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IV. Ne autem Sancti Officii negotiorum moles nimis hac accessione crescat, quidquid ad Indulgentias pertinet, omne iam esto Poenitentiarie Apostolicae: quae quidem pro suo instituto iudicabit de omnibus quae spectant ad usum et concessionem Indulgentiarum, salvo iure S. Officii videndi ea quae doctrinam dogmaticam circa novas orationes et devotiones respiciunt”: Cf. Benedictus XV, Motu proprio “Alloquentes proxime”(1917.5.25), *AAS* 9(1917), 167.

38) Cf. C. M. Fabris, *op.cit.*, pp.57~59; A. Saraco, “Penitenzieria Apostolica”,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332~333.

39) A. Saraco, *ibid.*, p.333.

“교황이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유보된 경우를 내사원 추기경에게 명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내적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사원은 그에 따른 모든 필요한 허가권을 지닌다.”⁴⁰⁾

내사원은 교황의 명시적 지시가 있으면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의 외적 법정에서 다른 모든 것을 내적 법정을 통해 다룰 수도 있다. 만약 문제의 해결책이 내사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교황과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교황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⁴¹⁾

내사원 추기경은 자주 교황을 알현하여 부서 업무 및 과정을 보고한다. 내사원 추기경은 하급 내사원 고해사제를 임명하고 그 권한을 위임한다. 하급 내사원 고해사제는 그들의 역할과 관련된 시험(교황청 규범에 의한)에 합격한 후 로마의 4대 대성당(성베드로 대성당, 라테란 대성당, 성모마리아 대성당, 성바오로 대성당)의 고해사제로 임명되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내사원 추기경은 하급 내사원의 고해사제들이 추천한 대리인들에게 그 역할과 관련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⁴²⁾

교황청 추기경은 기관의 공문서, 가장 중요한 답서와 서한에 서명하는 일과 일반교령, 대사교령, 내적 법정의 경우에 결정된 해결책을 전하는 답서도 다룬다.

또한 영혼의 선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본성 때문에, 사도좌의 공식 기간에도 내사원의 임무는 계속 수행된다.⁴³⁾ 그리고 내사원은

40) Benedictus XVI, “Rescritto ex Audientia SS.mi(2005.6.16)”[K. Nykiel, La Penitenzieria Apostolica: struttura, competenze, prassi, XXVII CORSO SUL FORO INTERNO(29 febbraio-4 marzo 2016), p.5: <http://www.penitenzieria.va/content/dam/penitenzieriaapostolica/eventi/xxvii-corso-foro-interno/02%20-%20Nykiel.pdf>에서 재인용].

41) Cf. N. Gori, “Interview with the Regent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L'Osservatore Romano(Weekly Edition in English), 19 March 2008, p.9.

42)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1~12.

43) Ioannes Paulus II, Cost. ap. “착한 목자”[*Pastor Bonus*(1998.6.28)], art. 6: “교황이 사망하면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과 의원들은 임무가 끝난다. 다만 로마 교회의 관방처장(官房處長, 라틴어 *Romanae Ecclesiae Camerarius*)과 내사원장(內赦院長, 라틴어 *Paenitentiaris Maior*)은 예외이다. 그들은 통상 업무를 처리하고, 교황께 보고할 사항

교황선거(Conclave) 때 긴급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내사원 추기경과 연락하는 역할을 한다.

내사원 추기경 다음 책임자인 섭정자(攝政者, regens)는 상급 고위 성직자(superior praelatus)다.⁴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사원 대표 추기경의 권위 아래 내사원을 통치하는 사람이며,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다. 또한 기관을 조직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일하면서 직무상 매일 출근하고 대표 추기경 부재시 그를 대신한다. 이에 더해 대표 추기경이 위임한 다른 권한을 행사한다. 그는 특별히 윤리신학과 교회법에 능통해야 한다. 다음은 내사원 추기경 평의회로서 섭정자와 5명의 고위성직자로 구성된 일명 ‘*Segnatura della Penitenzieria Apostolica*’가 있는데, 신학자, 교회법학자, 세 명의 교회법과 윤리신학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들은 내적 법정 내의 통치권한에 참여한다. 이 기관의 공무원들은 사제들이며 섭정자가 주재하는 매일의 회의에 참석하고 사건을 연구한다. 회의 내에 종합된 해결책은 내사원 추기경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⁴⁵⁾

2.4. 내사원의 관할권⁴⁶⁾

교황청 내사원의 관할권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공포된 사도 헌장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117~120조에 언급되어 있다. 제117조에서는 내사원의 관할권이 내적 법정 및 대사(大赦)에 관한 업무임을 언급하고, 제118조에서는 성사 내적 법정, 다시 말해 고해 성사 그리고 성사 밖의 내적 법정, 즉 내적 법정에서 사죄, 관면, 회복(보정), 교환, 면제 그리고 기타 은전 등과 관련된 조치를 다룬다. 다음에 언급될 양심과 관련된 경우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그 목

들을 추기경단에 제출한다. 사무처장들은 부서들의 통상 지휘를 맡고 통상 업무만 처리한다. 그러나 그들은 교황의 당선 후 3개월 안에 교황의 추인이 필요하다.”

44) Cf. Ioannes Paulus II, “Rescripto ex Audientia SS.mi”(1992.2.4), AAS 91(1999), 631.

45)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0~11.

46) Cf. G. Girotti, “Penitenzieria Apostolica. Commento agli artt. 117~120 della Pastor Bonus”, in *Commento alla Pastor Bonus e alle norme sussidiarie della Curia Romana*, P. V. Pinto(a cura d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3, pp.170~172.

적이 있다. 다만 교의적 문제에 대한 심사는 신앙교리성에 속한다(『착한 목자』 제120항 참조). 교황청 내사원의 과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권위적 지시와 방향을 제공하고 답변하는 윤리신학 교수 혹은 교회법 교수의 역할이 아니다. 이는 내사원에 의해 전달된 답변이 권위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음에 언급될 경우에 따라 참회자의 양심 표명을 시작으로 일어날 내사원 조사는 해당된 구체적 경우와 실질적 상황에 대한 조사일 뿐이다. 물론 답서 내용 중에는 교의적, 법률적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답서의 내용은 공개될 수 없다.⁴⁷⁾

3. 기관의 관할권에 포함된 빈번한 주제

3.1.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

1983년 교회법전은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인 파문 제재로 처벌되는 다섯 가지 범죄에 대해 언급한다. 자동처벌인 파문은 형벌의 한 유형으로, 정식 절차 또는 교령을 통해 부과할 필요 없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로 자동 발생한다. 몇몇 교정벌은 소속에 따라 교구 직권자 및 수도회 상급 장상의 권한에 의해 사면된다. 현행 법전에 언급된 다섯 가지 범죄는 저지른 사실 자체로 앞서 진술한 교황에게 유보된 교정벌에 처하게 된다.

- 지성한 성찬례에 대한 모독(교회법 1367조 참조)
- 성사적 비밀봉인에 대한 직접적 위반(교회법 1388조 1항 참조)
- 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1378조 참조)
- 교황 폭행 죄(교회법 1370조 1항 참조)

47)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0-15; A. Saraco, “Penitenzieria Apostolica”,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333-335; A. Saraco, *La Penitenzieria Apostolica - Storia di un tribunale di misericordia e di pietà*, pp.49-52.

—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1382조 참조)

최근 교회 규정에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인 파문 제재가 발생하는 범죄로 ‘여성의 성품에 대한 시도’가 추가되었다.⁴⁸⁾ 이 범죄가 공개되었다면 외적 법정을 통해 신앙교리성에서 진행되지만,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내적 법정과 내사원을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서품은 분명히 무효이며, 이 범죄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성품을 수여한 집전자는 성품을 부여받은 여성만큼 처벌받는다.⁴⁹⁾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의 세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파문 제재와 연관이 있고 사법상 선고 또는 선언의 대상이 아니었을 때 교황청 내사원을 통한 내적 법정에 대해 알아보자.

3.1.1. 지성한 성찬례에 대한 모독

성체 모독은 선 자체이신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미신적 또는 외설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혹은 더 일반적으로 개별 이든 단체든 지성한 성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에 해당하는 자발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체 모독 범죄의 성립요건은 온전한 독성의 의지(animus profanandi)를 지녔는지의 여부다.

교회법 제1367조는 축성된 성체를 버리거나 신성 모독을 목적으로 성체를 훼손하거나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저지른 사실 자체로 자동처벌인 파문 제재에 처한다.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다루기 때문에,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앙교리성만이,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교황청 내사원만이 사면 혹은 해결할 수 있다(『착한 목자』 제52

48) Cf.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Decreto Generale circa il delitto di attentata Ordine sacra di una donna”(2007.12.19), AAS 100(2008), 403.

49)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4~15;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53.

조; 제118조). 또한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성사 내적 법정에서 모든 사제가 사면할 수 있고, 만약 그 위험에서 벗어난 경우 외부 교회 권위자에게 다시 상고할 의무가 있다.⁵⁰⁾

3.1.2. 성사적 비밀봉인에 대한 직접적 위반

고해비밀 누설의 직접적인 위반은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인 파문으로 처벌되는 범죄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그러나 간접적인 위반은 불확정 선고 처벌(poena ferendae sententiae)로 부과된다. 이 범죄는 성직자만이 범하는 죄이며 성직자가 고해사제로서 행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성사적 사죄경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고해사제가 고백한 참회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 둘째, 고백 중 들었던 죄를 고의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범죄에 대한 파문 처벌 이유는 고해성사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죄의 용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며, 참회와 화해의 성사로서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자들이 고백의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떤 누구도 이 성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고해비밀의 신성함은 어떤 예외도 관면도 허용하지 않는다. 참회자가 죽은 후에도 고해사제는 여전히 성사적 고해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⁵¹⁾

50) 동방교회법 제1442조에서는 최고 파문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성직자인 경우 다른 형벌과 함께 제명처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

51)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5~16;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54; 동방교회법 제1456조 1항에 따라 고해비밀 누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고해사제는 최고의 파문으로 처벌된다. 물론 동방교회법 제728조 1항 1호에는 위와 같은 죄의 사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동방교회법전에서 고해비밀 누설의 직접적 위반은 사도좌에 유보된 죄로 간주한다. 자의 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4항 n.5에서는 참회성사의 신성함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신앙교리성에 유보되어 있고 당연히 이 경우는 외적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내적 법정은 교황청 내사원에서 이루어진다.

3.1.3. 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

공범자를 사죄한 범죄는 함께 정결을 거스른 죄에 참여한 참회자를 사제가 고해사제로서 그 죄를 사해 준 경우에 해당하며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 경우 교회법 제977조에 따라 실제로 고해사제는 죽을 위험을 제외하고 유효하게 사죄할 수 없다. 이 범죄의 중대한 문제점은 고해사제가 참회자와 함께 범한 정결을 거스른 죄가 아니라 유효하지 않은 사죄경을 그 공범자에게 부여한 점이다. 고해사제는 공범자에게 이러한 죄를 사죄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범죄 형태는 사제서품 전에 이루어진 죄일지라도 정결의 문제로 공범자와 저지른 모든 외적인 죄를 포함한다.

교회는 파문형벌이라는 방법을 통해 참회성사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죄인에 대한 효과적인 회복을 모색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공범자에 대한 사죄가 유효했다면, 죄는 습관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해사제는 두 사람 모두에 의해 저지른 공범자를 사죄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고해사제가 참회자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 같은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⁵²⁾

공범자가 고해사제와 함께 저지른 정결을 거스른 죄를 고해하지 않는다면(이미 다른 고해사제에게 사죄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결을 거스른 죄를 범한 사제와 공범자가 만나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옳다). 만약 고해사제가 정결을 거스른 죄에서 공범자를 사해 주는 순간에 파문 제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같은 경우, 무지가 그를 형벌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대한 무지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해성사 집전 권한이 있는 모든 고해사제는 이 성사와 관련된 교회규정들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⁵³⁾

52)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16~18.

53)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55; 동방교회법 제1457조에 따라, 정결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를

3.1.4. 교황 폭행 죄

이 범죄의 성립요건은 물리적인 폭력과 더불어 교황의 생명과 청렴함을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는 일어나기 어렵다.⁵⁴⁾

3.1.5.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

교황의 승인 없이 한 사제, 혹은 평신도에게 주교서품을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황의 승인 없이 주교서품을 행하는 가톨릭 주교만 범할 수 있다. 이 서품식은 유효하지만 불법이다. 성품을 수여하는 사람과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은 자동처벌인 파문 교정벌에 처한다. 만약 은밀한 경우(공개되지 않은 경우), 사면은 교황청 내 사원에 유보되어 있다. 만약 이 범죄가 공개되는 경우, 사면은 신앙 교리성의 관할권에 속한다.

3.1.6. 여성의 성품에 대한 시도

최근 교회 규정에 새로운 범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성품에 대한 시도이며 자동처벌인 파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범죄 역시 사도좌에 유보된 사항이다[『성사의 성성 보호』(*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5항 n.1 참조]. 외적 법정에서는 신앙교리성에, 내적 법정인 경우는 교황청 내사원이 진행한다. 이 서품식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수여를 시도한 집전자 및 성품을 받으려 했던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이후 만약 서품 수

사죄한 사제는 최고의 파문에 처벌된다. 물론 동방교회법 제728조 1항 2호에는 이 죄에 대한 사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외적 법정(공개된 경우)에서 이 문제의 심사는 신앙교리성에 판결에 달려있으며(*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4항 n.1 참조), 내적 법정에서 교황청 내사원의 예외적 관할권이 존재한다. 또한 동방교회법 제730조에서는 공범자의 사죄는 죽음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54) C. E. Commentz, *ibid.*

여를 시도한 사람이나 그 서품을 받으려 했던 여성이 동방교회에 속한 신자라면 동방교회법전 제1443조에 따라 최고 파문으로 처벌되며, 사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성사의 성성 보호』 5항 n.2 참조).

3.2. 교정벌의 사면

교정벌(censura)은 범죄를 저지른 이의 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료벌이다. 이 벌은 항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즉 권위자와 그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치료벌의 주된 목적은 항명을 교정하고 신자의 회심을 얻는 것이므로 정해진 시간 동안 부과될 수 없으며, 장상의 의지로 사면을 허용할 수 없다. 일단 항명이 끝나면 사면은 거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는 사면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⁵⁵⁾ 앞서 언급된 모든 범죄는 분명히 매우 중대한 범죄들이며, 교회법은 이 범죄들에 대한 가장 중대한 교회법 형벌을 설정했다. 가장 중대한 교회법 형벌은 파문(excommunicatio)이다. 왜냐하면 성사생활과 성사집행을 금지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파문 형벌에서 신자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교회 규정에 따라 특별권한을 지닌 권위자 혹은 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사도좌에 유보된 파문의 경우 관할권자는 교황청 내사원이며, 항상 은밀한 경우들에 해당하고, 외적 법정에서 파문이 선언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에 처해진 신자들에게 고해사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고해사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닌다. 첫째, 고해사제는 참회 당사자에게 본인의 교회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교정벌의 사면을 얻기 위한 소원을 제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참회자가 직접 교황청 내사원에 소원할 수 있지만, 고해사제를 통해 소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고해사제

55) 참조: 교회법 제1358조 1항.

는 참회자와 약속을 잡아야 하거나 참회자가 다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내사원의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한다. 소원장에는 비밀리에 참회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고(이 내용은 ‘3.3. 소원장 작성요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소원한 참회자의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교황청 내사원의 답변이 도착하면, 참회자는 고해사제에게 다시 출두하여 교정벌과 죄를 사면 받고, 관련 보속을 지시받는다.

둘째, 이 가능성은 소위 ‘긴급한 경우의 사면’으로, 고해사제가 참회자가 범한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참회자가 성사생활 없이 중죄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는 참회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참회자의 진정한 회개가 요구되며, 고해사제는 교회법 제1357조에 따라 교정벌과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참회자에게 보속을 받기 위한 적절한 기간(2~3주 뒤)과 참회 고행을 부여하고 다시 면담 날짜를 정하도록 한다. 고해사제는 이 사실을 보고하고 보속을 물어 보기 위해 30일 안으로 교황청 내사원에 청할 의무를 가진다. 내사원은 사건을 조사하여 사면을 허가하고, 사안에 대한 지령에 따른 책무와 보속에 대해 안내할 것이다.⁵⁶⁾

3.3. 소원장 작성요령

소원장은 고해사제를 통해 편지(letter)로 이루어진다. 가능하다면 명료함을 위해 타이핑으로 작성하면 좋다. 다만 참회자의 이름과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저 교

56)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56-58; 성직자들이 저지른 교정벌에 대해, 교회법 제1335조에 따라 교정벌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의 영적 도움이 필요할 때 성직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직권자는 자동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죽을 위험이 아닌 경우에도 그 성직자의 직무활동을 허락할 수 있다.

정벌에 대한 사면권한을 교황청 내사원에 묻거나 교회법 제1357조에 따라 참회자에게 이미 부여된 사면에 대한 추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고해사제가 과실을 가중시킬 수 있는 혹은 경감시킬 수 있는 범죄의 모든 상황을 간단명료한 형식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원장은 팩스 또는 이메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사적 비밀봉인으로 보호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지가 비밀봉인(sigillum)에 대한 불가침성을 더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현대의 모든 언어로 내사원 법원에 보내는 소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업무의 효율을 위해 그리고 더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혹은 폴란드어. 주소는 ‘Piazza della Cancelleria, 1, 00120, Città del Vaticano, Penitenzieria Apostolica’다.⁵⁷⁾

교황청 내사원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재차 요청하지 않도록 소원장에 다음에 제시할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성체모독에 대한 범죄의 경우

①	참회자의 대략적인 나이와 심리적 건강(the approximate age of the penitent and his psychological state)
②	범죄를 저지른 때(when the delict was committed)
③	저지른 범죄 횟수(how many times it was committed)
④	범죄를 저지른 방법(the manner in which it was committed)
⑤	성체모독을 초래한 동기(what the motives were behind the profanation)
⑥	혼자 범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했는지 여부(whether the delict was committed by only one person or more than one)
⑦	참회자가 어느 극단적 종교집단의 선동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 그렇다면 그 집단과의 관계를 끊었는지 여부(whether the penitent committed the delict at the instigation of a sect and, if so, whether he has broken all ties with it)

57)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62~63;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29~35.

- 성사적 비밀봉인에 대한 직접적 위반인 경우

①	참회자의 대략적인 나이(the approximate age of the penitent)
②	범죄를 저지른 때(when the delict was committed)
③	저지른 범죄 횟수(how many times it was committed)
④	범죄가 야기된 상황(the circumstances involved)
⑤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주의한 행동이었는지 여부(whether the delict was committed deliberately or if it was more an act of imprudence)
⑥	이 범죄로 인해 그 대상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했는지 여부(whether the person affected by the violation suffered damages)
⑦	참회자인 고해사제가 평소 이 같은 문제에 신중한지 여부(whether the penitent is a confessor who is normally prudent in this matter)

- 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 범죄인 경우

①	참회자의 대략적인 나이(the approximate age of the penitent)
②	공범자의 대략적인 나이(the approximate age of the accomplice)
③	공범자의 성별(the sex of the accomplice)
④	공범자의 혼인상태 및 신분: 미혼, 기혼, 수도자, 성직자(the state in life of the accomplice: single, married, religious, priest)
⑤	공범자가 사죄받은 횟수(how many times the accomplice was absolved)
⑥	참회자가 공범자를 마지막으로 사해 준 때(when was the last time that the accomplice was absolved)
⑦	참회자가 공범자와 비도덕적인 관계를 끝냈는지 여부(whether the penitent has ended the sinful relationship with the accomplice)
⑧	참회자가 사제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여부: 매일 미사 거행, 성무일도의 충실한 수행 등등(whether the penitent is living a life worthy of his priestly calling: daily celebration of Holy Mass, fidelity to the Liturgy of the Hours, etc.)

소원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더욱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참회자에게 부과될 참회 고행을 확정하기 위해, 그리고 고해사제에게 부여될 권한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교정벌에서 사면된

참회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고해사제는 교황청 내사원의 답변내용을 어떻게 사면 받은 참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적절한 방법은 다음 면담시간에 나누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해사제는 참회자와 서로 적절한 면담 날짜를 조율해야 한다. 참회자는 익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고해사제에게 참회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권리까지 존재한다. 고해사제와의 새로운 만남은 고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교황청 내사원의 답서 이후 교정벌에 대한 사면 권한이 수여되면 고해사제는 다음의 기도를 바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좌로부터 수여된 권한에 따라 본 사제는 당신의 파문 제재(혹은 정직 제재, 혹은 금지 제재)를 사하나다’[In forza del potere a me concesso, io ti assolve dal vincolo di scomunica(o sospensione o interdetto). Nel nome del Padre 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이후 신자는 ‘아멘’으로 응답한다.⁵⁸⁾

고해사제는 교황청 내사원의 답변 내용과 문서번호(Protocol),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문서를 파기해야 한다. 참회 당사자는 문서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사건이 공공연해지는 경우 새롭게 소원해야 할 수도 있기에, 참회자는 내사원 법원이 해당 사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번호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⁵⁹⁾

3.4. 성품 무자격 및 장애

성품 무자격(irregularitas)이란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그리고 적어도 관할권자로부터 관면되지 않은 이미 받은 성품권 행사가 금지되는 교회법상의 영구적 장애다(교회법 제1040~1041조; 제1044조 1항 참조). 성품 장애(impedimentum)란 성품을 받는 것에 대한 장애요인 혹은 이미 받은 성품권 행사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58)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65; *Rituale Romanum: Ordo Paenitentiae*,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4.

59)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35~36.

를 말하며 비영구적 성격을 지닌다(교회법 제1040조; 제1042조; 제1044조 2항 참조). 이러한 무자격과 장애는 형벌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성직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조항일 뿐, 관련 조항을 위반한 이를 처벌하거나 참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⁶⁰⁾ 성품 후보자가 이러한 무자격과 장애에 대해 모르고 있다(부지)는 사실은 이 금지조항에서 면제될 수 없는 일이다(교회법 제1045조 참조). 다시 말해 후보자가 관련 무자격과 장애에 관련된 행위를 수행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러한 금지조항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자격자가 되고 장애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신학교 양성과정 중 이러한 성품 무자격 관련 조항에 대한 교육이 각별히 요구된다.⁶¹⁾

교황청 내사원은 성품 무자격은 공공연해지지 않는 경우에 관면을 수여할 수 있다(물론 관면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면 수여의 여부는 오로지 내사원의 몫이다). 또한 무자격과 달리 장애의 경우,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할권자의 관면 없이 해결될 수 있다.⁶²⁾

내사원은 사도좌에 유보된 관면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들(교회법 제1041조 4호; 1044조 1항 3호 참조)에 대한 관면이 주를 이룬다. 교황청 내사원 소속 Corlos Encina Commentz 몬시뇰에 따르면 신학생인 경우,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경우에만 관면이 수여된다고

60) Cf.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2, Bologna, Edizione Dehoniane Bologna, 2011, p.246.

61) 무자격 관련 조항은 성직후보자가 성직에 오르기 위한 적합성을 판단받기 이전에 확인되어야 할 하나의 훈령(admonitio)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Cf. R. Selejdek,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nella formazione dei futuri sacerdoti”, in *La Penitenzieria Apostolica e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p.293;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Lettera circolare del 27 luglio 1992(Prot. n. 1560/90/18).

62) 다만 장애되는 요인이 지속된다면 관면을 청할 수 있다. 참조: G. P. Montini, “L'ordine sacro(cann. 1008-1054)”, in *La funzione di santificare della Chiesa: XX incontro di studio, Passo della Mendola - Trento, 5 luglio- 9 luglio 1993*,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a cura), vol.2, 1995, p.155.

지적한다.⁶³⁾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만 공공연해지는 경우 외적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다시 교황청 내사원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는 경우는 교구장 주교가 관면권을 지니며, 신자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내사원에 소원할 권리를 지닌다.⁶⁴⁾

일반적으로 고해성사나 신학교 양성자 및 영성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난다. 사제는 사죄경을 주는 성사 내적 법정이 아닌 성사 밖의 내적 법정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인물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이름이나 세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은밀히 소원장을 작성하고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소원장 내용은 무자격 관련 상황을 간단명료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3.3. 소원장 작성 요령’ 참조). 고해사제는 해당 인물과 관면에 대한 관할권자 간의 단순한 중개자일 뿐이다.⁶⁵⁾ 이후 내사원 답서를 받고 관면에 대한 권한이 수여되면 고해사제는 다음의 기도를 바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좌로부터 수여된 권한에 따라 본 사제는 당신이 범한 무자격을 면하나다’(In forza del potere a me concesso, io ti dispenso dall’irregolarità in cui sei incorso. Nel nome del Padre 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이후 신자는 ‘아멘’으로 응답한다.⁶⁶⁾

교회법 제1048조에 따르면 무자격으로 인하여 성품 행사가 금지된 성직자라도 긴급하고 은밀한 경우에 성품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긴급하고 은밀한 경우는 직권자 뿐만 아니라 교황청 내사원에 알릴 수 없을 때, 중대한 손해나 불명예의 위험이 닥쳤다면 가능하다. 다만 그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고해사제를 통해 되도록 빨리 직권자나 교황청 내사원에 소원할 책무가 남아 있다.⁶⁷⁾

63)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37.

64)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60-61;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1, pp.83-84.

65) 참조: 김의태, 앞의 글, 148쪽.

66)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65; *Rituale Romanum: Ordo Paenitentiae*,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4.

3.5.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질 다른 상황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질 소원은 죄, 교정벌, 무자격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밀한 상황, 즉 외적 법정에서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도 있다.

— 서원, 교회법적 규정으로 맡게 된 임무나 개인적 의무에 대한 관면(dispenia) 혹은 교환(comuntatio)이다. 예를 들어 시간경에 대한 의무, 사적 서원이나 공적 서원에 대한 관면 혹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교회에 대한 금전적 의무(예를 들어 교무금 면제, 봉헌금 면제 등등)의 관면은 관면 절차뿐만 아니라 교회의 추인도 필요하다.

— 무효의 원인이 은밀한 경우 효력은 없으나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유효화(convalidatio) 혹은 구제(sanatio)다. 예를 들어 무효의 요인을 지닌 수도 서원과 서품성사, 세례, 견진, 혼인에 대한 유효화가 그렇다. 이 경우들도 은밀한 경우여야 하며 내적 법정을 통해 교황청 내사원으로 소원할 수 있다. 다만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가 있다면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혼인의 경우 합의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⁶⁸⁾

— 신체적으로 힘든 경우 혹은 좋은 평판에 피해를 입은 경우 미사 책무를 관면, 축소, 혹은 교환할 수 있다(교회법 제945~958조, 동방교회법 제717조 참조). 대신 교구청, 신학교, 수도회공동체 등과 같은 기관에서 가중된 책무의 경우는 성직자성에서 관할한다.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미사를 거행하기 불가능한 사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미사의 대수를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해사제를 통해 청할 수 있다. 이 고해사제는 참회사제의 이름을 듣지 말아야 하며, 내사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67) Cf. C. E. Commentz,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62.

68) 참조: L. Vela, “근본유효화”, 『교회법률용어사전』, C. C. Salvador 외 2명,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294쪽.

1) 집전되지 않은 미사대수 2) 사제의 대략적인 나이 3) 미사를 접전하지 않은 이유와 미사를 통해 받은 예물의 사용처 4) 참회사제의 건강상태 5) 개인적으로 집전할 수 있는 미사대수 혹은 다른 사제들이 집전할 수 있는 미사대수 등이다. 교황청 내사원 소원장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한 후, 고해사제는 답서내용을 통해 집전되지 않은 미사대수를 축소하도록 지도할 것이다.⁶⁹⁾

—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해결이다. 내적 법정을 통해 교황청 내사원에 보내는 소원으로 은밀한 상황이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대상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생물학적 절차가 단순히 치료적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어느 협력단체의 악행과의 직접적 관련 여부, 방법적으로 그것이 필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다. 내적 법정에서의 소원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은밀한 사건에 적합한 수단이다. 문제가 공공연해질 경우 소원은 외적 법정, 특히 교황청 내사원이 아닌 다른 성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신앙교리성, 교회법 위원회 등등).⁷⁰⁾

4. 대사⁷¹⁾

대사의 수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은 교황청 내사원에서 담당한다. 다만 대사에 대한 독단적인 교리와 관련하여 신앙교리성의 권한을 항상 보존한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교령인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에 따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대사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신학적 토대를 바꾸지는 않았다. 성인들의 통공, 그들의 선행과 희생, 고행과 기도의 보속 공로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받을 잠시적 벌을 없이하여 준다는

69) Cf. C. E. Commentz,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pp.45~46.

70) Cf. *Ibid.*, pp.52~53.

71) 대사에 대한 내용은 광주대교구 이정주 신부의 아티클 「대사에 관한 교회법적 규범」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필자는 간략하게 대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사의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교회법 제992조에 따르면 대사는 하느님 앞에서의 잠시적 벌을 사면받는 것일 뿐, 죄에 대해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여한 벌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벌의 사면이다.⁷²⁾ 교황 바오로 6세는 개혁에 대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죽을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는 여러 번 수여가 가능하다.

— 부분대사는 날수나 햇수의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부분대사가 결부된 행위를 적어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완수한 신자에게 그만큼의 사면이 부여된다고 명시했다.⁷³⁾

— 개인과 사물, 장소에 따른 대사의 구별을 모두 폐지하여, 이 대사들이 때로는 사물이나 장소에 연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신자들의 행위에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했다.⁷⁴⁾

— 교구장과 법률상 이와 동등한 준교구장들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부분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교회법 제995조 2항에 따라 대사 수여권에 대한 위임은 사도좌로부터 명시적으로 유히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회의 모든 영적 보화를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교황은 보편교회에 대한 최고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사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구법전 제912조 참조). 따라서 교황은 교황청 내사원에 요청할 필요 없이 모든 대사를 수여할 수 있다. 게다가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교황청 부서장관들에게 대사에 대한 수여권을 위임할 수 있다. 현재 대사에 대한 수여와 사용은 교황청 내사원의 관할권에 속한다.⁷⁵⁾

72) 참조: 이정주, 「대사에 관한 교회법적 규범」, 『신학전망』 173(2011), 45~47쪽.

73) Cf. Paulus VI,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1967.1.1]), AAS 59(1967), n.938.

74) Cf. Ibid., n.939.

75) Cf. Penitenzieria Apostolica, “Enchiridion Indulgentiarum”(1968.6.29), AAS 60(1968), 413~419.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교황청 내사원의 특징, 역사, 구조, 관할권 그리고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내사원은 내적 법정이라는 형태로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범죄, 교정벌, 무자격, 장애 등등)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는 기관이다. 과거 형벌을 사면해 주는 교황권의 강화로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에 모여들었고, 교회는 일찍부터 신자들의 영혼의 선익과 내밀한 영역에 대한 돌봄을 이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이 내사원이 다른 교황청 사법기관보다 일찍부터 설립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적 학문 분석으로는 이러한 교회기관의 형태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사회 권력은 이러한 관할권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청 내사원 섭정자인 조셉프 니키엘(K. J. Nykiel, 1965~) 몬시뇰은 내적 법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적 법정은 하느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들의 총체다. 사회적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중재가 개입하는 법정이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사랑과 관련하여 신자들의 초자연적인 선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은총의 상태로 초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다.”⁷⁶⁾

교회의 중재를 통해 회복되는 신자 개인의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 역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예로 참회성사라고 하는 고해성사가 있으며 이는 특권적인 장소이자 내적 법정이 지닌 탁월함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성사적 형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또 다른 형태인 성사 밖의 내적 법정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사면절차를 제시하면서 많은 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왔다.

76) Cf. K. Nykiel, *op.cit.*, p.185.

대사 수여 및 사용에 대한 권한 위임만을 요청했던 한국교회 역시 이 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지닌 한국교회 사제들이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한국교회에도 사도좌에 유보된 죄를 범한 이들, 교정벌에 처한 이들, 그리고 성품 관련 무자격과 장애에 처한 이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의 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신자들이 영적이며 내적인 권리를 알고 누리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교황 문헌

- Benedictus XV, Motu proprio “Alloquentes proxime”(1917.5.25), *AAS* 9(1917), 167.
 Benedictus XVI, “Rescritto ex Audientia SS.mi”(2005.6.16) [K. Nykiel, La Penitenzieria Apostolica: struttura, competenze, prassi, XXVII CORSO SUL FORO INTERNO(29 febbraio-4 marzo 2016), p.5].
 Ioannes Paulus II, Cost. ap. “착한 목자”(Pastor Bonus[1998.6.28]), *AAS* 80(1988), 841~930.
 _____, “Rescritto ex Audientia SS.mi”(1992.2.4), *AAS* 91(1999), 631.
 Sixtus V, Cost. Ap. “Immensa Aeterni Dei”(1588.1.2), *Bullarium Romanum* 8(1863), 985~999.
 Pius X, Cost. ap. “Sapienti consilio”(1908.4.29), *AAS* 1(1909), 7~19.
 Pius XI, “Quae divinitus”(1935.3.25), *AAS* 27(1935), 97~113.
 Paulus VI,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8.15]), *AAS* 57(1965), 885~928.
 _____, “대사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1967.1.1]), *AAS* 59(1967), 5~24.

2. 교회법 문헌

- 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Pietro Gasparri(ed.),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21.
 Ioannes Paulus II,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5.
 요한 바오로 2세,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한국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3. 교황청 문헌

- Congregazione per l'educazione Cattolica, *Lettera circolare del 27 luglio 1992* (Prot. n. 1560/90/18).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 “Decreto Generale circa il delitto di attentata Ordinazione sacra di una donna”(2007.12.19), *AAS* 100(2008), 403.

Penitenzieria Apostolica, “Enchiridion Indulgentiarum”(1968.6.29), *AAS* 60(1968), 413~419.

_____, *Guida e regolamento dell'archivio storico*,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3.

Rituale Romanum: Ordo Paenitentiae,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4.

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주교회의 회보』 36 (1986), 12쪽.

5. 단행본

Commentz E., *Quando e come ricorrere alla Penitenzieria Apostolic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²2015.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1~2, Bologna, Edizione Dehoniane Bologna, ³2011.

Paolis V. D., *Andrea D'auria, Le Norme Generali: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1, Citta del Vaticano: Urbaniana University Press, 2008.

Prodi P., *Una storia della giustizia. Dal dualismo dei fori al moderno dualismo tra coscienza e diritto*, Bologna: il Mulino, 2000.

Re N. D., *La Curia romana. Lineamenti storico-giuridici*, Roma: Typis Polyglottis Vaticanis, ³1970.

Saraco A., *La Penitenzieria Apostolica - Storia di un tribunale di misericordia e di pietà*,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1.

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183~184쪽.

6. 정기간행물

Arrieta J. I., “Il foro interno: natura e regime giuridico”, *Iustitia et Iudicium* v.3, 2010, 1249~1250.

Costantino M. F., “Il foro interno nell'ordinamento giuridico ecclesiale”, *Pravo Kanoniczne* 58(2015) n.3, 32~34.

- Fabris C. M., “Il foro interno nell’ordinamento giuridico ecclesiale”, *Prawo Kanoniczne* 58(2015) n.3, 54.
- Rodríguez A. M., “Forum internum-forum externum(En torno a la naturaleza jurídica del fuero interno)”, *Revista Española de Derecho Canónico* 23(1967), 256~284.
- 김의태, 「내적 법정 안에서 성품 관련 무자격 및 장애에 관한 소고」, 『이성과 신앙』 66(2018), 146~147쪽.
- 김효석, 「가톨릭교회의 내적 법정에 관한 소고」, 『가톨릭 신학』 25(2012), 51~52쪽.
- Paolis V. D., “De recognoscendo iure poenali canonico”, *Periodica* 63(1974), 66.
- 이정주, 「대사에 관한 교회법적 규범」, 『신학전망』 173(2011), 45~47쪽.

7. 사전

- Angelis S. D., “Foro”, in *Dizionario di teologia morale*, F. Roberti/Palazzini P., Roma: Editrice Studium, 1954, p.541.
- Commentz C. E., “casi riservati”,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p.62~63.
- Nykiel K., “Foro interno”,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enitenziaria Apostolic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6, p.186.
- Miragoli E., “Penitenziaria Apostólica”, in *Diccionario General de Derecho Canónico*, vol. 6, Navarra: Universidad de Navarra, 2012, p.107.
- Saraco A., “Penitenziaria Apostolica”, in *Peccato Misericordia Riconciliazione: Dizionario Teologico Pastorale*, p.327.
- Vela L., “근본유효화”, 『교회법률용어사전』, C. C. Salvador 외 2명, 한동일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294쪽.

8. 편집단행본

- Girotti G., “Penitenziaria Apostolica. Commento agli artt. 117~120 della Pastor Bonus”, in *Commento alla Pastor Bonus e alle norme sussidiarie della Curia Romana*, P. V. Pinto(a cura d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3, pp.170~172.
- Grochowski Z., “I Tribunali”, in: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 P. A. Bonnet - C. Gullo(a cura d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pp.396~399.
- Montini G. P., “L’ordine sacro(cann. 1008~1054)”, in *La funzione di santificare della Chiesa: XX incontro di studio*, Passo della Mendola - Trento, 5 luglio- 9 luglio 1993, gruppo italiano docenti di diritto canonico(a cura), vol.2, 1995, p.155
- Luno A. R., “Benedetto XIV e la Riforma della Penitenzieria Apostolica”, in *Penitenzieria apostolica e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Percorsi storici-giuridici-teologici e prospettive pastorali*,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p.163.
- Selejdek R.,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nella formazione dei futuri sacerdoti”, in *La Penitenzieria Apostolica e Il sacramento della penitenza*, Citta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9.
- Urrutia F. J., “Il criterio di distinzione tra foro interno e foro esterno”, in *Vaticano II: Bilancio e prospettive - Venticinque anni dopo(1962~1987)*, I R. Latourelle(a cura di), Assisi: Cittadella, 1988, p.550.

9. 신문기사

- Gori N., “Interview with the Regent of the Apostolic Penitentiary”, *L’Osservatore Romano*(Weekly Edition in English), 19 March 2008, p.9.

본 연구를 통해 교황청 내사원의 특징, 역사, 구조, 관할권 그리고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내사원은 내적 법정이라는 형태로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는 기관으로 국가의 사법기관과 다른 교회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특히 사도좌에 유보된 죄를 범한 이들, 교정벌에 처한 이들, 그리고 성품 관련 무자격과 장애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조치인 것이다. 소위 낙오자들처럼 여겨졌던 이들에게는 신앙회복과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은 너무 멀게 느껴졌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그들의 회복을 위한 내사원의 조치가 고해사제의 중재와 고해사제의 편지, 그리고 한국어 접근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자와 교황청과의 체감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중재를 통해 회복되는 신자 개인의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는 신자누구에게도 예외 될 수 없는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신자들이 영적이며 내적인 권리를 알고 누리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내사원, 내적 법정, 자비의 법정, 교정벌의 사면, 관면.